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기재하는 방법을 보완하도록 서식을 개선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차감액 명세서를 신설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4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금액의 차감액 명세서

제48조의10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금액의 차감액 명세서

별지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4서식, 별지 제40호의10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4서식 및 별지 제43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납부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안>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년 월 귀속)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측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납세지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 계
양 도 일		⑥			
토 지 등 매 매 차 익		⑦			
기 신 고 (결 정) 된 매 매 차 익 합 계 액		⑧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⑦+⑧)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가 산 세	무(과소)신고	⑫			
	납부불성실	⑬			
	기 타	⑭			
	계(⑫+⑬+⑭)	⑮			
기납부세액		⑯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⑪+⑮-⑯)		⑰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의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⑤ 납세지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양도가 있는 달의 말일, 그 전에 사망·출국 시에는 사망일·출국일)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한 지방자치단체명을 시·군·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만약,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당시 주소지등으로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 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3조제1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⑦ 토지등매매차익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⑧ 토지등 매매차익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3. ⑩ 세율란: 아래의 세율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가산세란: ⑩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③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④ 기타에는 「지방세법」 제99조 제103조의9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세 율 표(「지방세법」 제93조제6항)

구 분		코드	세율
토지 또는 건물(비사업용 토지 등은 아래 내용에 따라 적용)		10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0.6%~4.2%)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외	11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에 1000분의 10을 더한 세율(1.6%~5.2%,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지정지역 내	31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8호의 세율에 1000분의 10을 더한 세율(2.6%~6.2%,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미등기자산		30	7%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1	5%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1세대 2주택	51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에 1000분의 10을 더한 세율(1.6%~5.2%,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주택과 조합원임주권 각각 1개씩 보유)	52	
	1세대 3주택 이상	55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에 1000분의 20을 더한 세율(2.6%~6.2%,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3주택 이상(주택과 조합원임주권을 보유한 경우 그 수의 합이 3 이상)	56	

- ※ 지정지역(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 2017. 8. 3): 서울특별시(용인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 ※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른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

과세표준	2017년		과세표준	2018년 이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2018. 12. 3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역(26개 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액자개발지구(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2액자개발지구·목라·방곡리·신척리·송라·신라·영천리·오신리·장지리·종라·창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액자개발지구에 한함),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아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안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한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주택임대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납 세 지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 대 전 화								⑧ 전자우편주소							
⑨ 기 장 의 무				①복식부기의무자				②간편장부대상자				③비사업자			
⑩ 신 고 유 형				①1자기조정 ①2외부조정 ①4성실신고확인 ②0간편장부 ③1추계-기준율 ③2추계-단순율											
⑩ 분리과세(주택임대)				④0비사업자											
⑪ 신 고 구 분				⑩정기신고 ②0수정신고 ③0경정청구 ④0기한후신고 ⑤0추가신고(인정상여)											
⑫ 환급금 계좌신고				⑬ 금융기관명				⑭ 계좌번호							
③ 세 무 대리인				⑭ 성 명				⑮ 사업자 등록번호				-			
⑮ 전 화 번호															

④ 세액의 계산															
구 분		개인지방소득세													
과 세 표 준		⑰													
세 율		⑱													
산 출 세 액		⑲													
세 액 감 면		⑳													
세 액 공 제		㉑													
결 정 세 액	중 합 과 세(⑰-⑳-㉑)	㉒													
	분 리 과 세 주 택 임 대 소 득 합	㉓													
	계(㉒+㉓)	㉔													
가 산 세	무(과소)신고	㉕													
	납부불성실	㉖													
	기 타	㉗													
계(㉕+㉖+㉗)		㉘													
추 가 납 부 세 액		㉙													
합		계(㉔+㉘+㉙) ㉚													
기 납 부 세 액		㉛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㉚-㉛)		㉜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1부 2.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각 1부 3. 합계잔액시산표 1부 4. 조정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1부 5. 소득공제신고서 1부 6.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신청서 1부 7.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부 8. 그 밖의 첨부서류 1부
------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하여 예정이오나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세 을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7년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8년 이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 7 -

③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⑬ 과세표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㉑	과세표준란의 금액	
⑭ 세율: 「지방세법」 제93조제4항제2호		1.4%
⑮ 산출세액: (과세표준 ⑬ × 세율 ⑭)		
⑯ 세액감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㉓ ×10%		
⑰ 결정세액: ⑮ - ⑯		
⑱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 타	
	합 계	
⑲ 총결정세액: ⑰+⑱(합계란 금액)		
㉑ 추가납부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㉒ ×10%		
㉒ 납부할세액: ⑲+㉑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8 -

(년 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고인 (양도인)	성명 전자우편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신고	기본정보	양도일자	신고유형
③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분
④ 세율구분	코드 지방소득세 합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⑤ 과세표준			
⑥ 세율			
⑦ 산출세액			
⑧ 감면세액			
⑨ 외국납부세액공제			
⑩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⑩ 특별징수세액공제			
⑪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타		
	합계		
⑫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			
⑬ 납부(환급)할 총세액 (⑦-⑧-⑨-⑩+⑪-⑫)			
⑭ 환급금계좌신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중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군·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② 신고 기본정보란: 양도일 및 다음 중 해당하는 신고유형 코드를 적습니다.

신고유형 코드	신고구분	신고유형명	납세성립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1	예정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개월 이내	(예정) 2020년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 (확정) 2020년 이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 ※ 개정 전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
2	예정	국내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3	예정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4	예정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5	확정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과세기간종료일	다음연도 5월말일	
6	확정	국내주식(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포함)	과세기간종료일		
7	확정	국외주식	과세기간종료일		
8	확정	파생상품	과세기간종료일		
9	예정	부담부증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개월 이내	
A	예정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출국일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와 동일

4. ③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등
5. ④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의 ④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 ⑤ 과세표준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⑧ 과세표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아래 ‘가’와 ‘나’의 금액 중 큰 것으로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8. ⑧ 감면세액란 및 ⑨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⑩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⑩~⑬까지 항목의 100분의10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⑩ 특별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10. ⑪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제53-5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8 및 제103조의9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⑫ 기신고, 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2. ⑭ 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금받을 본인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작성 방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일반세율 적용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1-10	0.6~4.2%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집주권 제외)	1-15	4%
	다. 1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집주권 제외)	1-20	5%
	라.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집주권	1-40	4%
	마. 미등기 양도	1-30	7%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1-25	4.5%
	사. 1세대2주택과 조합원집주권자의 합이 30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1-28	4.5%
	아.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1-11	1.6~5.2%
	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35	4%
	차.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36	5%
	카.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1	2.6~6.2%
	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7	4%
	파.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8	5%
	하. 비사업용토지,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1-26	6%
	가. 비사업용토지,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1-10	0.6~4.2%
	나.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집주권 수의 합이 30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1-71	1.6~5.2%
	다.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집주권 수의 합이 30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1-73	4%
	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양도주택을 선양한 지리('18.1.1. 이후 양도분)	1-21	5%
내	마.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1	1.6~5.2%
	바.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3	4%
	사.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집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2	1.6~5.2%
	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집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4	4%
	자.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5	2.6~6.2%
	차.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7	4%
	카.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집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0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6	2.6~6.2%
	타.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집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0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8	4%
	다.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집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0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8	4%
	타.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집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0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8	4%
산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주식 등)	(상환,비상환)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1-70	3%
	나. 중소기업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법인 국외주식	1-62	1%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 국외주식	1-61	2%
	라.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	1-63	2~2.5%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1-10	0.6~4.2%
	나. 주식 외의 것	1-10	0.6~4.2%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1-27	6%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3.16.~'15.12.31. 양도분	1-10	0.6~3.5%('12.1.1. 이후 0.6~3.8%)
외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0.5%('18.3.31. 이전)
		1-81	1%('18.4.1. 이후)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
	6. 「소득세법」 제111조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송세)	1-94	2~2.5%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0.6~4.2%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2-42	4%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2-42	4%
	나. 중소기업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법인 국외주식	2-44	2%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 국외주식	2-44	2%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가. 주식	2-10	0.6~4.2%
	나. 주식 외의 것	2-10	0.6~4.2%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안>

(앞쪽)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						
특별 징수 의무 자	성명(상호명)				성명(상호명)				성명(상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① 세 목	지 방 소 득 세	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① 세 목	지 방 소 득 세	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① 세 목	지 방 소 득 세	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③ 납부액	일금	원정		③ 납부액	일금	원정		③ 납부액	일금	원정				
구 분		인 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구 분		인 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구 분		인 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4) 이자소득					(4) 이자소득					(4) 이자소득				
(5) 배당소득					(5) 배당소득					(5) 배당소득				
(6) 사업소득					(6) 사업소득					(6) 사업소득				
(7) 근로소득					(7) 근로소득					(7) 근로소득				
(8) 연금소득					(8) 연금소득					(8) 연금소득				
(9) 기타소득					(9) 기타소득					(9) 기타소득				
(10) 퇴직소득					(10) 퇴직소득					(10) 퇴직소득				
(11)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11)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11)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12) 비거주자 양도소득					(12) 비거주자 양도소득					(12) 비거주자 양도소득				
(13) 법인원천	내국법인				(13) 법인원천	내국법인				(13) 법인원천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14) 가감세액(조정액)					(14) 가감세액(조정액)					(14) 가감세액(조정액)				
(15) 가산세					(15) 가산세					(15) 가산세				
계					계					계				
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했습니다.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인		○○○ 수납기관			○○○ 인		○○○ 수납기관			○○○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기관 귀하		수납기관 귀하			수납기관 귀하		수납기관 귀하			수납기관 귀하				

※ 납부장소 : ① (방문납부) 전국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 ② (인터넷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작성방법

1.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및 제103조의56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 을 적습니다.
3.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
4. ④~⑬ 과세표준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④~⑬ 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할 세액을 적습니다.
6. ⑭ 가감세액(조정액)은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한 조정세액 및 연말정산 추가납부 등으로 인한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 연말정산세액 등의 조정은 본 납부서에 기재한 경우만 가능하며, 임의 조정하여 총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⑮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작성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액을 기재합니다. 이 때 가감세액(조정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가감한 후의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일 25/100,000)
8.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웨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왼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산정항이 적지 않습니다. (양쪽)

납수번호		납부일자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⑫수시부과기간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 외국 3. 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일반		⑮외투감사대상		1. 예 2. 부	
⑯종 류 별 구 분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당기중이의 과세			
영리 법인		11 71 81 91		⑰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소기업		21 72 82 92		2. 수정신고(가. 서면문서, 나. 기타)	
중기업		31 73 83 93		3. 기한후 신고	
비영리 법인		41 74 84 94		4. 중도폐업신고	
5. 결정정정구					
⑱법 인 유 형 별 구 분 1. 영리 2. 비영리		⑲결 산 확 정 일			
⑳신 고 구 분 1. 신정일		㉑납 부 일			
㉒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정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㉓주식변동		1 2		㉔장부전신화	
㉕사업연도의제		1 2		㉖결손금 소급금제 환급신청	
㉗등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㉘원부수에 대한 법인소득세 신고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법인 지 방 소 득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⑳수 입 금 액				
㉑과 세 표 준				
㉒표 준 산 출 세 액				
㉓부 담 세 액				
㉔기 납 부 세 액				
㉕차 감 납 부 할 세 액				

□ 안분율의 계산

①종업(가정)원 1. 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②특·광역시·자치정부 1. 예 2. 부		
③해당사업장 명칭	④소재지		
⑤안분율의 계산	⑥연면적		
구분	총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법인전체	(명)	건물	(소수점6자리)
시군구내		기계장치	
비율(%)		시설물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㉖납세지별 산출세액	㉗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㉘납세지별 가산세액	㉙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 신고	납부(한금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불성실	㉚납세지별 특별징수납부세액
	기타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㉛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㉜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㉝탄력세율 적용 조정세액		
환급금 계산 (환급세액 중 과다로 받는 경우)	㉞공공기관명	㉟예금주
	㊱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인)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일반무신고와 부당무 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3(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4제1항)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6.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㉔란, ㉕란 및 ㉖란에 각각 적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법인별 세액의 계산	⑮세 율					
	⑯표 준 산 출 세 액					
	⑰가 산 세 액					
	⑱가 감 계(⑯+⑰)					
	기 납부 세액	⑲특별징수납부 세 액				
		⑳()세 액				
㉑계(⑲+⑳)						
㉒차 감 납 부 할 세 액(⑱-㉑)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㉓본점/지점여부		1. 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㉔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㉕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㉖안분율					
	구분	종업원 수 (명)	건 축 물 연 면 적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안분율(%) (소수점6자리)
	시군구내					
	비율(%)					
	㉗납세지별 산출세액				㉘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㉙납세지별 가산세액				㉚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		과소(초과환급) 신고	납부(환급) 불성실	기타	㉛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㉜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㉝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㉞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환 급 금	㉞금융기관명					
	㉞예 금 주					
	㉞계 좌 번 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명 또는 인)

1. ①소재지 ~ ⑭비과세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외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⑭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3. ⑮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4. ⑯표준산출세액: ⑬과세표준에 ⑮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⑰가산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6. ㉔본점/지점여부: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 '○' 표시를 하며, ㉔목·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비행령」 제8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 표시를 합니다.
㉔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7. ㉔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left[\frac{\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right) +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right] \div 2$$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㉔납세지별 산출세액: ⑯표준 산출세액 × ㉔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9. ㉔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10. ㉔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1. ㉔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㉔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㉔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㉔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은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한 후의 잔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기재한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13. ㉔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본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본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4. ㉔타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다음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text{타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표준세율} \times \text{안분율} \times \left(\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text{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1 \right)$$

15. ㉔해당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㉔납세지별 산출세액 - ㉔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 ㉔납세지별 가산세액 + ㉔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㉔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㉔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㉔타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㉔금융기관명 ~ ㉔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7.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 업 연 도	· · · ~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차감액 명세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관리번호

① 사업연도	내역				
	② 경정연도	③ 과다납부한 세액	④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	⑥ 환급제한과다납부세액(③×(⑤/④))
⑦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 합계					
⑧ 각 사업연도별 차감한도(⑦ X 20퍼센트)					

⑨ 사업연도	⑩ 연도별 차감대상금액	⑪ 차감할 세액	⑫ 잔액
⑬ 합 계			

1. ① 사업연도란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를 기재하고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기재합니다.
2. ② 경영연도란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산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경정을 받은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3. ⑦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 합계란은 ⑥의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⑨ 사업연도란은 차감대상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5. ⑩ 연도별 차감대상금액란은 가산세 및 수정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6. ⑪ 차감할 세액란은 ⑧ 각 사업연도별 차감한도와 ⑩ 연도별 차감대상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7. ⑫ 잔액란은 ⑦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합계에서 ⑪ 차감할 세액의 합계 금액을 차감 후 잔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⑪연결사업연도~.....	⑫법인종류별 구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⑬조정구분 []외부 []자기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⑭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청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결정청구					
⑮법인세신고일		⑯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		⑰사업연도제 []여[]부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④ (생략)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00조의12제5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 ~ 5. (생략) <u><신 설></u>	⑤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차감액 명세서</u>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② (생략)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00조의25제2항에 따른 세액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 4. (생략) <u><신 설></u>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차감액 명세서</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